

『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법률 제7374호(2005. 1. 27)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이 변경되어 2005. 7.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용자사업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

나.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-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기금 용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05. 7. 28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
-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용자사업 대상자에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시켰고,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중 소비자 단체의 교육·홍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
-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한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.